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의안번호 : 제1913호
- 발 의 자 : 이호대 의원 외 13명
- 발의일자 : 2020. 10. 15.
- 회부일자 : 2020. 10. 26.

2.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의안번호 : 제1914호
- 발 의 자 : 이호대 의원 외 13명
- 발의일자 : 2020. 10. 15.
- 회부일자 : 2020. 10. 26.

3.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의안번호 : 제1915호
- 발 의 자 : 이호대 의원 외 13명
- 발의일자 : 2020. 10. 15.
- 회부일자 : 2020. 10. 26.

II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」 상 오기(誤記) 및 잘못된 약어 사용, 모호한 문구를 바로 잡고, 조례상 용어 사용을 일관성 있게 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III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」에 대해 개정 대상 조문을 어문 교범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함.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규 및 기준 :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(제9판)
2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3. 기 타
 - 입법예고(2020.10.29.~11.5): 의견 없음.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,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, 「서울특별시 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15일 이호대 의원 등 14명의 의원에 의해 각각 의안번호 제1913호, 제1914호, 제1915호로 제출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,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,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오기(誤記) 및 잘못된 약어 사용, 모호한 문구를 바로 잡고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위해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수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최근 법제처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령에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, 어문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,

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구조, 어려운 한자어와 예스러운 말투, 어색한 번역 투 표현으로 가득한 법령문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‘법령용어 순화사업’과 ‘법률 한글화 사업’ 및 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’을 진행해 왔습니다.¹⁾

1) 법제처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(제9판)」, 2019.12.

-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법적 간결성 및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자 하는 것으로,

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말의 올바른 쓰임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.

나. ‘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한 조문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제2조제2호의 “한다)를”을 “한다)을”로 오기를 수정하고,

제3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제1호의 “학교시민들”을 “학교시민”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인바,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서울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6017, 2020.11.10.).

다. ‘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한 조문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 중 “기관에게”를 “기관에 대하여”로, 제3조 중 “교육감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”로, 제5조 및 제8조 중 “단체에게”를 “단체에 대하여”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특히 안 제2조, 제5조 및 제8조와 관련하여 기관이나 단체는 무정명사이므로 “에게”를 쓰지 않고 “에”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,²⁾ 제

3조의 “교육감”의 경우 비록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라 할지라도 교육감의 소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 법적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는바, 조례 정비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서울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6017, 2020.11.10.).

라. ‘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한 조문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교육감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“교육감”이라 한다)”로, “학부모”를 “학생의 학부모”로 하고,

제4조제1항 중 “서울시교육청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

제5조 중 “서울특별시교육청”을 “교육청”으로, “서울특별시교육감”을 “교육감”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서울시교육청은 이 중 안 제2조제1항의 “학부모”를 “학생의 학부모”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, “학부모란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학생의 학부모는 의미가 중복”되므로 현행 조례와 같이 유지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6017, 2020.11.10.).

- 이와 관련하여 “학부모”의 사전적 의미는 “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뜻”으로 “학생의 학부모”로 표현할 경우 의미가 중복되는 측면도 있으나, 조례상 의미는 조문 전체의 방향성과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에 따라 달리 쓰여질 수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서의 학부모가 어떠한

2) 법제처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(제9판)」, 2019.12. p.64. 참고로 무정명사란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는, 식물이나 무생물을 나타내는 명사를 말함. 반대어-유정명사.

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

- 예를 들어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학부모회 조례”) 제2조제2호에 따르면 “학부모”란 “부모,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·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”고 규정되어 있어,³⁾

학부모회 조례의 경우 학부모를 해당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뿐만 아니라 미취학 학생의 학부모까지 포함하여 학부모를 정의하고 있으며, 이는 동 조례의 방향성과 취지에 맞게 적용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- 이와 같은 취지에 따른다면 동 개정조례안의 경우 무료법률 상담대상자가 각급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에 있어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를 “학생의 학부모”로 명확히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겠는바,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 수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 등 3건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3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2. "학부모"란 부모,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·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